

## 2025) 조경(산업)기사 필기 1차 정오표 [2025.4.4]

### ■ 제1과목. 조경사

해당 페이지	해당 위치	오	정
1-169	확인노트 ■ 석란지	• 지당의 석교는 무지개형 곡선형태이며, 속에는 석분에 심은 과석 <u>3개</u> 와 기물을 받혔던 양련 받침대석이 있음	• 지당의 석교는 무지개형 곡선형태이며, 속에는 석분에 심은 과석 <u>2개</u> 와 기물을 받혔던 양련 받침대석이 있음
1-183	민간정원 요약 음성	• 직경 300~500m, 인구 <u>300</u> ~1500명 거주 추정	• 직경 300~500m, 인구 <u>800</u> ~1500명 거주 추정

### ■ 제2과목. 조경계획

해당 페이지	해당 위치	오	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-75	③ 도시공원 및 녹지 세분 ① 도시공원의 유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목적</th> <th>이용권 /설치장소</th> <th>면적</th> <th>공원시설의 설치면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공원</td> <td>도시민의 휴식과 정서생활함양</td> <td>제한 없음</td> <td>제한 없음</td> <td>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어린이공원</td> <td>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함양</td> <td>250m 이내 / 2~3분</td> <td>1,500m<sup>2</sup> 이상</td> <td>6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근린생활권 근린공원</td> <td rowspan="4">근린 거주자의 보건·휴양과 정서생활함양</td> <td>500m 이내 / 7~8분</td> <td>10,000m<sup>2</sup> 이상</td> <td>4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도보권 근린공원</td> <td><u>1km/15분</u></td> <td><u>30,000m<sup>2</sup> 이상</u></td> <td rowspan="3">4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도시지역권 근린공원</td> <td><u>기능을 충분히 발휘</u></td> <td><u>100,000m<sup>2</sup> 이상</u></td> </tr> <tr> <td>광역권 근린공원</td> <td><u>할 수 있는 장소</u></td> <td><u>1,000,000m<sup>2</sup> 이상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	목적	이용권 /설치장소	면적	공원시설의 설치면적	소공원	도시민의 휴식과 정서생활함양	제한 없음	제한 없음	20% 이하	어린이공원	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함양	250m 이내 / 2~3분	1,500m <sup>2</sup> 이상	60% 이하	근린생활권 근린공원	근린 거주자의 보건·휴양과 정서생활함양	500m 이내 / 7~8분	10,000m <sup>2</sup> 이상	40% 이하	도보권 근린공원	<u>1km/15분</u>	<u>30,000m<sup>2</sup> 이상</u>	40% 이하	도시지역권 근린공원	<u>기능을 충분히 발휘</u>	<u>100,000m<sup>2</sup> 이상</u>	광역권 근린공원	<u>할 수 있는 장소</u>	<u>1,000,000m<sup>2</sup> 이상</u>	
		유형	목적	이용권 /설치장소	면적	공원시설의 설치면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공원	도시민의 휴식과 정서생활함양	제한 없음	제한 없음	2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어린이공원	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함양	250m 이내 / 2~3분	1,500m <sup>2</sup> 이상	6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근린생활권 근린공원	근린 거주자의 보건·휴양과 정서생활함양	500m 이내 / 7~8분	10,000m <sup>2</sup> 이상	4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보권 근린공원	<u>1km/15분</u>	<u>30,000m<sup>2</sup> 이상</u>		4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시지역권 근린공원	<u>기능을 충분히 발휘</u>	<u>100,000m<sup>2</sup> 이상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광역권 근린공원	<u>할 수 있는 장소</u>	<u>1,000,000m<sup>2</sup> 이상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-95	㉔ 공원기본 계획의 수립 · 용도지구	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공원문화 유산지구</td> <td>•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(寺刹)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(佛事)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원문화 유산지구	•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(寺刹)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(佛事)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원문화 유산지구	•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(寺刹)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(佛事)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